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5
----------	-----------

2019년 6월 28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단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마이스 전담조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2조제1항제2호)
-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15조제1항제5호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이스(MICE)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설립 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”을 “시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”를 “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5조제1항제5호를 “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“마이스 전담조직”이란 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<u>설립·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<u>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육성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~4항(생략)</p> <p>5. <u>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전담기구의 마이스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마이스 전담조직”이란 관광,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<u>시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)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<u>제5장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5조(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1~4항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